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39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서미화 · 김종민 · 이수진
이정문 · 허성무 · 이광희
용혜인 · 최혁진 · 이학영
손 술 · 전종덕 · 김예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운영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학대 조사기관이 같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의11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위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11제4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11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 래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u>비영리법인</u> 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 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 ----- ----- ----- ----- ----- <u>비영리법인</u>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u>제외한다</u>)-----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